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

July 2026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ESG Reporting & Assurance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

Issue Report | July 2026

Contact us

ESG Reporting & Assurance

한대근

상무

E. dhan2@kr.kpmg.com

권민정

이사

E. minjeongkwon@kr.kpmg.com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민경석

수석연구원

E. kyeongseokmin@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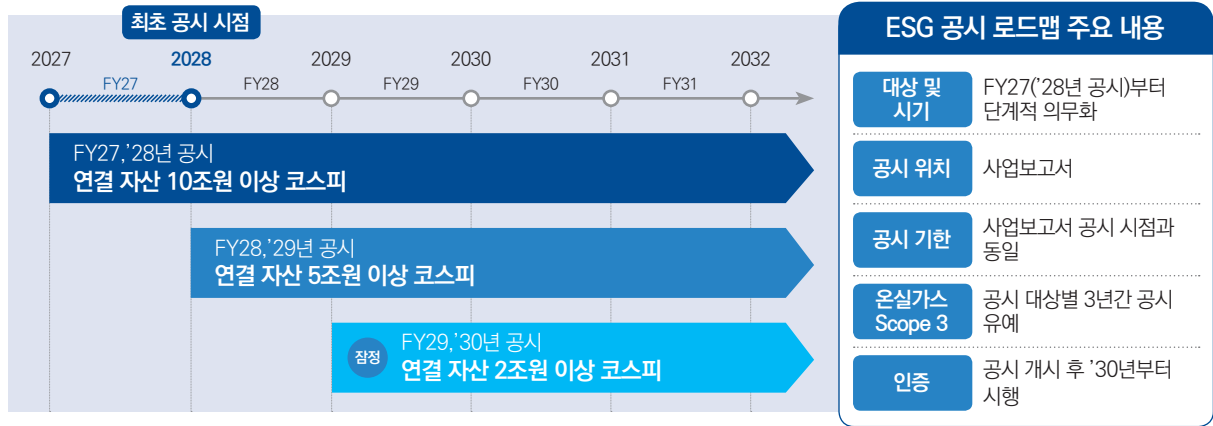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및 ESG R&A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4
I.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6
1.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7
2. 한국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	11
3. 지속가능성 공시 패러다임의 전환	18
II.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21
1.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책임	22
2.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	23
III. 감사위원회를 위한 기후 공시 준비 감독 고려사항	30
1. 기후 공시 거버넌스 구축 및 감독	31
2. 기후 공시 정보 감독	33
3. 기후 관련 위험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37
4. 외부 인증	40

Executive Summary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요약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기준 내용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 개념적 기반-정보 공시의 기초 사항 (공정한 표지, 중요한 정보,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등) ✓ 일반 요구사항-정보 공시의 방식 (보고시기와 공시위치, 비교정보, 준수 문구, 판단, 측정 불확실성 및 오류 등)	-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 - 기후 관련 재무영향(현재/미래) 및 회복력 (시나리오 분석), 산업 전반 지표 등 세부정보 공시 요구
적용 범위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 적용	기업이 노출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및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기회
주요 구조	목적 및 적용 범위 개념적 기반, 일반 요구사항,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거버넌스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방법 -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등 공시
	전략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관련 정보 - 현재 및 미래 재무영향 (재무 계획 반영 포함) 및 회복력 등 세부 공시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식
	지표-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된 기업의 지표, 수립한 목표 및 성과 (진척 현황) - 공시기준 요구 지표, 기업의 측정 및 모니터링 지표 및 목표 공시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		
적용지침, 예시지침 및 사례, 결론도출근거		
경과 규정	최초 적용 기업은 당해 기간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허용 (비교공시 면제)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여부는 기업이 선택 가능	온실가스배출량 관련 완화 적용 (측정 방법론, 스코프 3 공시 유예)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안)

기존 회계감독 역할

재무제표 감독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감사위원회
역할의 확장

감사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로의 확장

01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

-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중요성 평가 포함)
- 데이터 정확성 및 완전성
-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및 추정 정보의 합리성

02 지속가능성 공시 내부통제 감독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 공시정보와 연계된 통제 및 절차 (IT 포함)
- Audit Trail 확보

03 외부 인증인 감독

- 인증인 선정 (적격성, 독립성 등)
- 인증 범위와 수준 결정
- 인증 결과/발견사항 검토 및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를 위한 기후 공시 준비 감독 고려사항

1 기후 공시 거버넌스 구축 및 감독

- 기후 공시 책임·역할이 명확히 배분되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점검
- 관련 기구·인력이 적절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
- 감사위원회 감독 역할과 범위를 규정·운영체계에 명확히 반영

2 기후 공시 정보 감독

- 중요성 판단 기준 및 공시 범위의 합리성과 적용 일관성 검토
- 배출량 등 기후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검증 가능성 점검
- 공시 간 정합성(재무제표·사업보고서·지속가능성 보고서) 확보 여부 확인
- 기후 정보가 재무제표 인식·측정 및 회계추정에 반영되는지 점검

3 기후 관련 위험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 기후 위험이 ERM 전 과정(식별-평가-대응-모니터링)에 통합되어 있는지 확인
- 기후 데이터 및 공시 프로세스에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 적용 여부 검토
- 내부감사를 통해 기후 데이터·위험관리 체계가 독립적으로 검증되는지 확인

4 외부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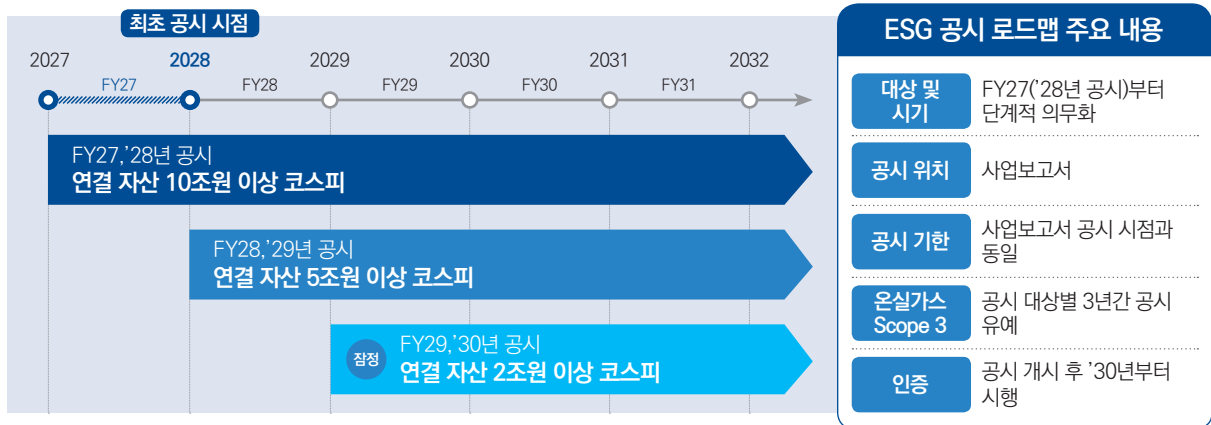
- 인증 범위·대상 설정의 적정성 검토
- 인증기관의 전문성, 이해상충 여부 등 평가
- 인증 결과 및 발견사항이 내부통제 개선으로 연계되는지 점검

I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1.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¹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초안은 2028년(FY20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공시를 시작하고, 거래소 공시를 거쳐 향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공급망 배출량(Scope 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간 유예하고,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를 우선 의무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위험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이슈로 부상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 정보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공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당초 의견수렴안보다 강화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2026년 7월 8일에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 공시시기 및 대상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28년(FY20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FY2028)에는 적용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후 2028~2029년의 공시 운영 결과와 기업의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30년(FY2029)부터는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¹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2026.7.8
관계부처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2026.7.8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는 개별회사가 아닌 연결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종속회사 전반의 데이터 산정·취합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전환 위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의 공시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공시 첫해에 한하여 연결 기준 자산과 매출 비중이 각각 10% 미만인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모회사와 주요 종속회사를 중심으로 공시 체계와 실무를 우선 구축한 후, 이를 전체 주요 종속회사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공시채널 및 면책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활용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FY2027)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는 3월 말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채널과 시점에 공시되며, 투자자는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두 정보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와 위험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역시 사업보고서 공시 일정에 맞추어 3월 말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당초에는 관련 인증 절차 일정을 고려하여 반기보고서 시점 공시가 검토되었으나, 배출권거래제상 검증기관의 검증 수치와 최종 인증 수치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 수치를 우선 공시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즉시 의무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면책(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우선 제도 시행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후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한 한시적 면책을 제공한다. 면책 대상에는 예측·추정정보와 제3자 제공 정보뿐 아니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위험 관리체계 등 역사적 사실 정보도 포함된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공시나 그린 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가 그대로 적용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추정정보 및 기업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해외 종속회사가 현지 법률상 자료 제공에 제약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관련 가정과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공시하였으며 필요한 주의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행정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 형사책임도 배제될 수 있다.

(3) 제3자 인증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운영되는 만큼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공시 실무 관행의 형성, 인증기준 마련, 인증기관 등록 및 감독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 의무화는 공시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시 개시 후 203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인 인증제도는 향후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정부는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아직 국내 인증시장의 성숙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체계 등 일부 핵심 정보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수준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과도하게 높은 규제 수준을 적용할 경우 특정 인증기관이나 지역의 시장 선점, 시장 경쟁 저해, 기업의 인증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인증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게 중립적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 품질관리기준 등 인증제도의 핵심 요소는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주도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4) 스코프 3 시행

Scope 3(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의견수렴안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부는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산정하기 위한 기업의 준비 부담과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 기업별 의무공시 시점으로부터 3년간 Scope 3 공시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최초 공시 대상 기업의 경우 Scope 3 정보는 2031년부터 공시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기업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Scope 3 공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배출량 관리 필요성이 높은 산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중소 공급망 기업의 규제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요약)**

**주요 변화
Summary**

- ✓ 최초 공시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이후 단계적 로드맵 제시)
-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즉시 시행
- ✓ 공시 개시 ('28년) 2년 후 제3자 인증 의무화 (FY29 공시정보에 대해 '30년부터 의무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과 초안 비교내용 상세]

	최종안 ('26.07.08)	초안 ('26.02.25)
변경 공시대상	-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행 후 점진적 확대 ✓ 28년 (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29년 (FY28)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잠정) 30년 (FY29)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행 후 점진적 확대 ✓ 28년 (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 (예시) 29년 (FY28)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추후 국제동향에 맞춰 추가 확대 논의
변경 첫해 유예기준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의 국내외 종속기업 공시 면제 (and 조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 또는 매출이 연결기준 10% 미만의 국내외 종속기업 공시 면제 (or 조건)
변경 공시채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내 공시 (법정공시 바로 적용)	거래소 공시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 전환)
변경 공시시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과 동일한 3월말 공시 (배출량 정보도 배출권거래법상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3월말 동일하게 공시)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과 동일한 3월말 공시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 8월 중순 공시 허용)
변경 면책 적용	- 도입 초기 3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 면제 *단, 고의성에 따라 손해배상·행정책임 적용	도입 초기 첫해, Safe harbor 적용 및 제재조치 유예
변경 제3자 인증	공시 개시 후 '30년부터 시행 (FY2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30) 공시부터 인증 의무화)	도입 초기 자율적 인증 (추후 주요국 동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 마련 검토)
Scope 3 유예	3년 유예 (최초 공시기업의 경우, 31년 (FY30) 부터 공시 시작)	3년 유예 (최초 공시기업의 경우, 31년 (FY30) 부터 공시 시작)

2. 한국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²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가 발간한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제1호와 제2호 기준서로 구성된다.

▶ 한국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서의 구성

번호	명칭	주요 내용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IFRS S2 기반)

제1호 ‘일반 요구사항’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따라야 할 전반적인 원칙과 요구사항을 규정한 본문과 이를 보충하는 세부 설명 성격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동일하게 본문과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계는 ISSB 기준의 구조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공시 원칙과 주제별(기후) 공시 요구사항을 분리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 ACI, “Monthly Newsletter 4월호 - 지속가능성(ESG) 공시 준비단계에서 이사회의 점검사항”, 2025.4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의 주요 내용”, 2026.2.26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요약”, 2026.2.26

▶ **한국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 요약**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기준 내용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 개념적 기반-정보 공시의 기초 사항 (공정한 표지, 중요한 정보,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등) ✓ 일반 요구사항-정보 공시의 방식 (보고시기와 공시위치, 비교정보, 준수 문구, 판단, 측정 불확실성 및 오류 등)	-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 - 기후 관련 재무영향(현재/미래) 및 회복력 (시나리오 분석), 산업 전반 지표 등 세부정보 공시 요구
적용 범위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 적용	기업이 노출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및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기회
주요 구조	목적 및 적용 범위 개념적 기반, 일반 요구사항,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핵심 요소	거버넌스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방법 -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등 공시
		전략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관련 정보 - 현재 및 미래 재무영향 (재무 계획 반영 포함) 및 회복력 등 세부 공시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식
		지표·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된 기업의 지표, 수립한 목표 및 성과 (진척 현황) - 공시기준 요구 지표, 기업의 측정 및 모니터링 지표 및 목표 공시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	
적용지침, 예시지침 및 사례, 결론도출근거		
경과 규정	최초 적용 기업은 당해 기간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허용 (비교공시 면제)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여부는 기업이 선택 가능	온실가스배출량 관련 완화 적용 (측정 방법론, 스코프 3 공시 유예)

(1) 제1호 ‘일반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중장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공시를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는 기후,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시 대상 범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기업(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실체)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재무보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시 기준은 정보이용자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간 연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정보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내부의 연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가정은 가능한 한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표시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정보 간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시 내용은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식별·관리·대응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Q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의 중요성 판단 기준 비교³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동일한 중요성 정의를 적용하지만, 공시의 목적과 정보의 성격이 달라 서로 다른 중요성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중요성 판단 기준

특정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할 경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

중요성 판단 시 고려하는 정보의 성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구분	지속가능성 공시	재무제표
정보 유형	미래 지향적 정보	과거 및 현재의 재무정보
범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기업의 거래 및 사건 중심
기간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고려	과거 및 보고기간 내 발생한 항목에 초점
제약 요소	자산 및 부채의 인식 기준에 구애 받지 않음	자산 및 부채의 정의, 인식 기준에 따라 작성

제1호(일반 요구사항)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재무보고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유용하게 제공되도록 공시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3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2026.2.26

우선,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며,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을 기준으로 동시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공시 위치나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우선 적용한다.

또한, 공시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당기 정보에 대한 전기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술형 정보 역시 투자자에게 유용한 경우 비교정보로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한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보의 공시가 금지되거나, 기회 관련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경과규정 측면에서는 기업의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성이 제공된다. 기업은 최초 적용 시 기후 관련 위험·기회만을 우선 공시할지, 또는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까지 포함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후 정보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서도 그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처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후 관련 정보 및 기타 지속가능성 정보 모두에 대해 비교정보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면제 규정이 허용된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선택 공시, 예외 및 경과규정을 통해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동시에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공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공시 역량 제고와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공시의 발행 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를 재무보고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통제 감독 체계 하에 두어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SSB)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의 차이⁴

선택 공시 허용 -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정보 공시 -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정보(산업기반지표 포함) 공시 - 내부 탄소 가격 중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톤 당 가격에 대한 정보 공시	예외사항 추가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 추가	기간범위 명확화 - 기간범위를 정의하여 제시 ✓ 단기: 1년 ✓ 중기: 1~5년 ✓ 장기: 5년 이후
	경과규정 적용 연장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3년 유예	경과규정 재적용 의무공시로의 전환 시, 경과규정 재적용 가능
추가 공시 요구사항 - 발행 승인일, 승인자 공시 - 기후 공시 생략 시, 그 사실 및 근거 공시 - 측정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화 공시		

4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요약”, 2026.2.26

(2)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의 요구사항

① 적용범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 중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 대상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기후 관련 위험은 기후 변화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홍수·가뭄과 같은 물리적 위험과, 기후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전환 위험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후 관련 기회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기업은 이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중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만약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준서에 따른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된다.

② 공시 핵심요소 1: 거버넌스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측면의 정보 공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선,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 대해, 해당 책임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사안이 의사결정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통합되는 방식, 전략 감독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노력, 관련 사안의 보고 빈도,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가 포함된다.

또한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이행 현황을 감독하는지, 나아가 관련 성과지표가 보상체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공시 항목으로 제시된다.

더불어 경영진 차원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모니터링·관리·감독하기 위한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전반에 걸친 역할과 책임을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실행 및 관리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

③ 공시 핵심요소 2: 전략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기후 대응 전략과 재무적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 관련 공시 요건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공시하여야 하며, 각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전환 위험인지 구분하여 설명하고,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범위(단기·중기·장기)를 명시해야 한다. 기준에서는 단기를 1년 이내, 중기를 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를 5년 초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단기, 중기 및 장기의 기간범위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산업별 특징을 포함한 여러

요소(예: 현금흐름, 투자 및 사업주기, 전략적인 의사결정 및 자본할당 계획을 위해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통용되는 계획기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해당 산업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간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며, 특히 이러한 영향이 집중되는 지리적 위치, 주요 시설, 자산 유형 등 구체적인 노출 영역을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변경, 공급망 협력 등 직접적·간접적 대응 노력과 함께 자원배분 및 사업모형 변화 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하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을 보고기간과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공시하도록 요구되며, 가능한 경우 양적·질적 정보를 통해 이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거나 측정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또는 기업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적 정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기후 변화 및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회복력 평가 결과와 함께 전략 조정 및 적응 역량, 자원 확보 가능성, 자산 재배치 능력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분석 방법, 수행 시점, 사용된 시나리오와 주요 가정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 대응 역량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공시 핵심요소 3: 위험관리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공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우선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하는 프로세스와 정책을 공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위험 식별 여부와 방법, 위험의 성격·발생가능성·영향 규모를 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후 관련 기회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를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하는 데 적용되는 프로세스를 공시하도록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와 어떻게 연계·통합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즉, 기후 관련 요소가 기존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내에서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기후 이슈를 개별적 사안이 아닌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

⑤ 공시 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기후 대응 성과와 관리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 공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업 전반 지표로서 온실가스 총배출량(Scope 1·2·3)을 이산화탄소 환산톤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GHG 프로토콜」에 따른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회에 각각 노출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중, 기후 관련 자본적 지출 및 투자 현황, 내부탄소가격의 활용 여부 및 방식, 그리고 기후 관련 요소가 경영진 보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산업기반 지표를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을 참고하도록 권고된다.

더불어 기업은 기후 관련 목표와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설정한 정량·정성 목표, 규제상 요구되는 목표 여부, 적용 범위와 기간 등이 포함된다. 이 때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는 접근 방식, 제3자 검증 여부, 목표 달성 진척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관련 지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관련하여 기업은 해당 목표가 총배출량 기준인지 순배출량 기준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공시해야 하며, 순배출량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총배출량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고 탄소크레딧 활용 계획(유형, 의존도, 검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목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3. 지속가능성 공시 패러다임의 전환⁵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확정과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의 도입은 기업 공시 체계 전반에 걸친 공식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하여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활동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기업별 공시 범위와 기준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긍정적 정보 중심의 편향된 공개로 그린워싱 우려가 제기되는 한계가 존재했다.

[해외 사례] ESG 워싱 처벌 사례

독일 자산운용사 A사의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CSO)였던 B씨는 ESG 투자 규모와 자산 비율이 실제보다 과대 공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제기하였으나, 해당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이를 미국 및 독일 관계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ESG 워싱과 관련하여 A사는 각각 1,900만 달러와 2,500만 유로의 벌칙금을 부과받았다.⁶

이 사례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생성 및 검토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지속가능성 정보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이는 곧바로 중대한 준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독 기능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ACI, “Monthly Newsletter 4월호 - 지속가능성(ESG) 공시 준비단계에서 이사회의 점검사항”, 2025.4
ESG CoE, “KSSB Talking Points”, 2026.3

6 임팩트온, “A사, 그린워싱 스캔들로 4000억원 이상 벌금 부과 확정”, 2025.4.4 (원제목 일부 수정)

그러나 2028년(2027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공시 기준은 이러한 자율적 공시를 넘어 규제 기반의 표준화된 정보 제공 체계를 요구한다. 이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단순 참고자료를 넘어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투자자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율·홍보 중심에서 규제·표준화·객관적 정보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재무보고 수준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명확한 중요성 판단 기준, 일관된 산정 방법론, 그리고 책임 있는 내부 거버넌스를 포함한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공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시 목적 재정립, 재무 중요성 기반 정보 선별, 재무 연계성 확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및 통제 체계 고도화 등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며, 이는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공시기준 도입 전후의 변화와 시사점

의무화 전	의무화 후	시사점
기업 일부에 대한 긍정적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 선택적 공시 (PR목적, 평가대응 등)	재무보고 수준의 공시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공정하고 충실한 표현의 검증 가능한 정보 공시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검증 가능성에 대한 감독 필요
이해관계자 중요도 기준의 상대적·주관적 중요성 판단 (기업 자율)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기회 기반의 재무 중심 중요성 판단(지속적 재평가)	중요성 판단 기준 및 결과에 대한 감독 필요
기업 자율에 따라 설정된 지표 및 목표 중심 공시 (비교가능성 낮음)	산업 전반 지표(산업 기반 지표는 선택적)와 기업 고유 지표를 포함한 표준화된 지표 체계 및 방법론 공시	공시 지표의 측정 기준 및 목표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감독 필요
지속가능성 이슈와 재무영향 간 연계 공시는 선택적·제한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현재 및 미래 재무영향 공시 의무화	재무정보와의 정합성 및 측정에 대한 감독 필요

의무화 전	➤ 의무화 후	➤ 시사점
공시에 사용된 방법론, 가정 또는 재작성(restatement) 사항은 제한적 공개	공시 정보의 작성 과정에 사용된 판단, 가정, 불확실성 및 재작성 정보까지 포함하여 공시	주요 판단 및 가정의 합리성 및 공시 오류/재작성 리스크에 대한 감독 필요
ESG 거버넌스에 대한 개괄적(high-level) 수준의 형식적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관리·감독(governed) 체계(예: 통제, 정책, 절차,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공시	관리·감독 체계의 실질적 운영 필요(예: 핵심 ESG 지표와 연계된 KPI 및 보상체계의 구체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이 요구되지 않으나, 자율적·형식적 제3자 인증 수준	공시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인증 의무화 및 형식적 대응을 넘어 인증가능한 수준의 공시체계 구축 요구	인증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및 품질관리체계를 고려한 선정 감독 필요

II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1. 이사회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거버넌스 책임

지속가능한 경영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성과 및 장기적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 전략, 운영 및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러한 전환 전략과 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자본 접근성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이는 시장의 압력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환을 가속화하는 순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사회는 기업의 사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사적 위험관리의 방향성을 정의하고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지속가능성 전환을 포함한 경영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과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거버넌스 체계와 이사회와 감독 역할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전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사례] 호주 기업 이사회와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 감독 책임

호주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법률⁷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나, 호주 회사법은 이사회에 지속가능성 공시 거버넌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호주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연차보고서의 일부로 제출되며, 이사회는 해당 보고서가 관련 법과 기준(ASRS⁸/AASB S2⁹)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이사회 선언을 통해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의 공시 내용에 대해 사실상 최종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호주가 채택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방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시된 거버넌스 체계가 실제로 작동함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과 공시 준비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호주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금융시장 인프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재무법 개정법(Treasury Laws Amendment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nd Other Measures) Act 2024)에 의해 개정된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따라 의무화되었다.

8 ISSB 기준서를 기반으로 만든 호주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 Australi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9 ISSB S2 기준서를 기반으로 한 호주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 기준.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S1.

나아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공시에 준하는 수준의 신뢰성, 내부통제 및 공시 인증(assurance) 감독을 요구하므로,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적·제도적 체계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을 위해 이사회 내 특정 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업무의 성격과 각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감독 기능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예: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하고, 위원회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

다만, 이사회 내에서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동시에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감독 대상에 대한 자기 검토(self-review)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감독 역할

감사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수행을 위한 다양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통제·감사 기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기능을 기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포함 시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감독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정보의 정확성, 외부 인증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보고에 대한 전문성과 감독 경험을 보유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재무정보 공시 신뢰성 확보를 담당해 온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재무제표 및 내부통제 감독 등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으로 확장되고 있다.

10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 2026.2.26

[참고자료] 감사(위원회)의 주요 법적 권한

상법, 외부감사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업무 및 회계 감독 권한’, ‘주요 보고 수령’, ‘외부 자문비용 지원’, ‘외부감사인 선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신뢰성을 감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권한 유형	상법	외부감사법
1. 업무 및 회계 감독 권한	제393조 이사회에의 권한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5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제447조의3 정기적 감사를 위한 보고수령 제402조 및 제391조의2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2. 주요 보고 수령	제412조의2 이사 보고 수령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제22조 이사의 부정행위 보고 수령
3. 외부 자문비용 지원	제412조제3항 ¹¹ 제415조의2제5항 ¹² 제447조의4제3항 ¹³	제22조제3항 ¹⁴
4. 외부감사인 선임	-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11 상법 제412조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2 상법 제415조의2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13 상법 제447조의4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14 외부감사법 제22조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안)

☑ 기존 회계감독 역할



☑ 감사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로의 확장

01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

-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중요성 평가 포함)
- 데이터 정확성 및 완전성
-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및 추정 정보의 합리성

02 지속가능성 공시 내부통제 감독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 공시정보와 연계된 통제 및 절차 (IT 포함)
- Audit Trail 확보

03 외부 인증인 감독

- 인증인 선정 (적격성, 독립성 등)
- 인증 범위와 수준 결정
- 인증 결과/발견사항 검토 및 커뮤니케이션



(1)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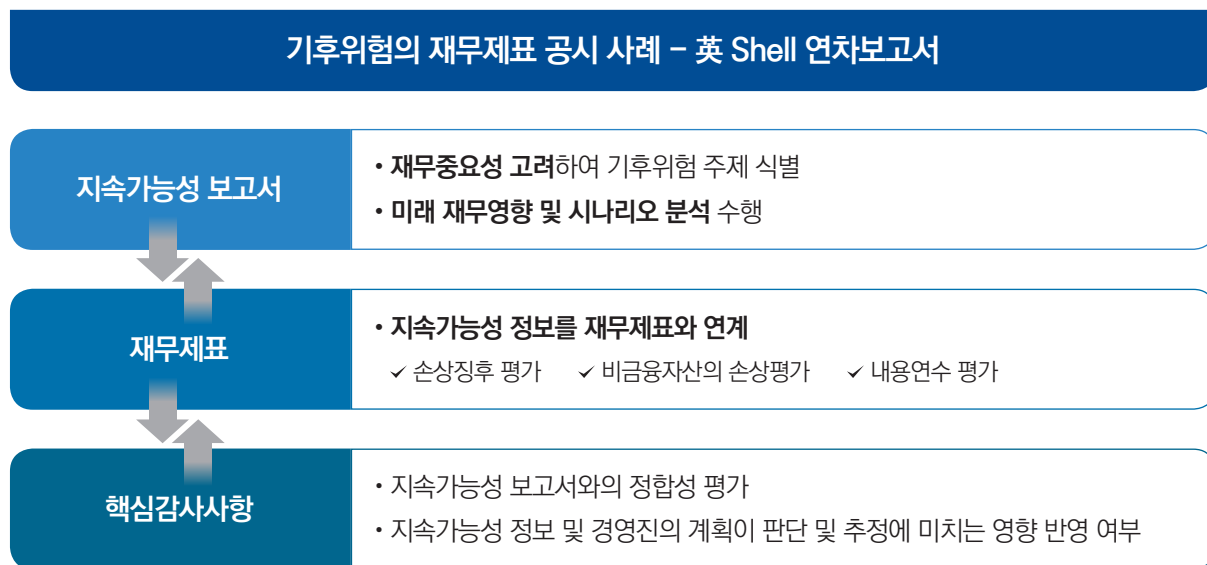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는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가 확정되고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단순한 비재무 정보 중심의 자발적 공시를 넘어, 재무제표와 유사한 수준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을 요구하는 공시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 역시 기업의 의사결정과 투자판단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재무제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하되 일부 미래 추정을 반영하여 재무적 영향을 인식하며,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치, 손상평가, 내용연수 등에 적절히 반영되는지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현재 및 미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시되는 지속가능성 정보는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연차보고서 등과 서로 연계되어 분석 시 사용한 가정, 분석 수치나 서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이후 감사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확성, 관련 법규 및 기준서 준수 여부, 적시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른 대외 공시자료 및 마케팅 자료와의 정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 영국 Shell의 지속가능성 정보-재무제표의 연계¹⁵



[국내 사례]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영향 분석¹⁶

A사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활용하여 물리적 위험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A사의 전 세계 32개 사업장(14개 생산 법인, 12개 일반 사무실, 6개 연구소)이며 정량적 재무 영향 분석을 위해 2023년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 및 재고자산과 사업장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활용했다.

재무영향은 1995년을 기준년도로 5년 단위로 산정되며, 분석 대상 매출 및 자산의 2030년 손실 금액은 약 2,200억 원(SSP 1-2.6) ~ 3,000억 원(SSP 5-8.5)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재해별 영향경로의 경우 강풍, 침수, 산불 등 급성 재해는 건물, 설비, 재고 등 자산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판매제품의 생산중단을 초래하여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폭염에 따른 만성적 기후패턴 변화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은 A사의 사업모형 중 ‘제품의 생산제조’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시나리오	SSP 1-2.6	SSP 5-8.5	SSP 1-2.6	SSP 5-8.5	SSP 1-2.6	SSP 5-8.5
재무영향(억 원)	2,200	3,000	4,300	7,100	5,500	12,200

15 Shell,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

16 현대자동차,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p. 37

[해외사례]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에 관한 규정

구분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
EU	• EU 감사지침(제39조)을 개정(2022년)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지속가능성 보고 감독 기능을 부여 - 전통적 재무보고 감독 기능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인증 포함) 감독기능까지 역할을 확대 〈제39조제6항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내용 발췌〉 ①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인증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인증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 ② 지속가능성 보고 과정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른 정보 식별 과정을 감독하며,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 또는 제안 ③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하여 기업 내부 품질관리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을 감독 ④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인증을 감독 ⑤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인의 독립성을 검토 및 감독하고 비감사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 ⑥ 지속가능성 보고 인증인 선정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임될 인증기관을 추천
일본	• 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정 공시인 유가증권보고서(Annual Securities Report) 안에 포함되면서, 기존 재무보고와 동일하게 감사위원회의 책임·통제 범위에 들어옴 → 감사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의 신뢰성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

[해외사례] 해외 기업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역할

기업	감사위원회 역할
Danone (프랑스 식품기업) ¹⁷	• 이중 중대성 평가 절차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세스 감독 • 지속가능성 감사인이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 성과를 모니터링
AXA (프랑스 금융기업) ¹⁸	• 공시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준비하는 과정을 모니터링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들에 대해 보상·거버넌스·지속가능성 위원회와 함께 이사회에 공동 권고안을 제출
Rio Tinto (호주 광업 기업) ¹⁹	• 재무제표상 기후 관련 주요 판단 영역에 대한 감독 •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증을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에 대해 승인
Shell (영국 에너지 기업) ²⁰	• 회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이사회를 지원 • 또한 특정 중요한 보고 공시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

(2) 지속가능성 보고 내부통제(ICSR) 체계 감독

전통적인 재무보고 체계 내에서는 결산 프로세스와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정의·확립되어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을 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지속가능성 공시의 경우 결산 프로세스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거나 반복성이 낮고, 업무 분장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Sustainability Reporting, ICSR) 체계는 미비하거나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공시해야 하고, 해당 정보가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 역시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 확보라는 재무보고의 통제 목적과 유사한 데이터 관리·보고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17 Danone,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 Annual Financial Repor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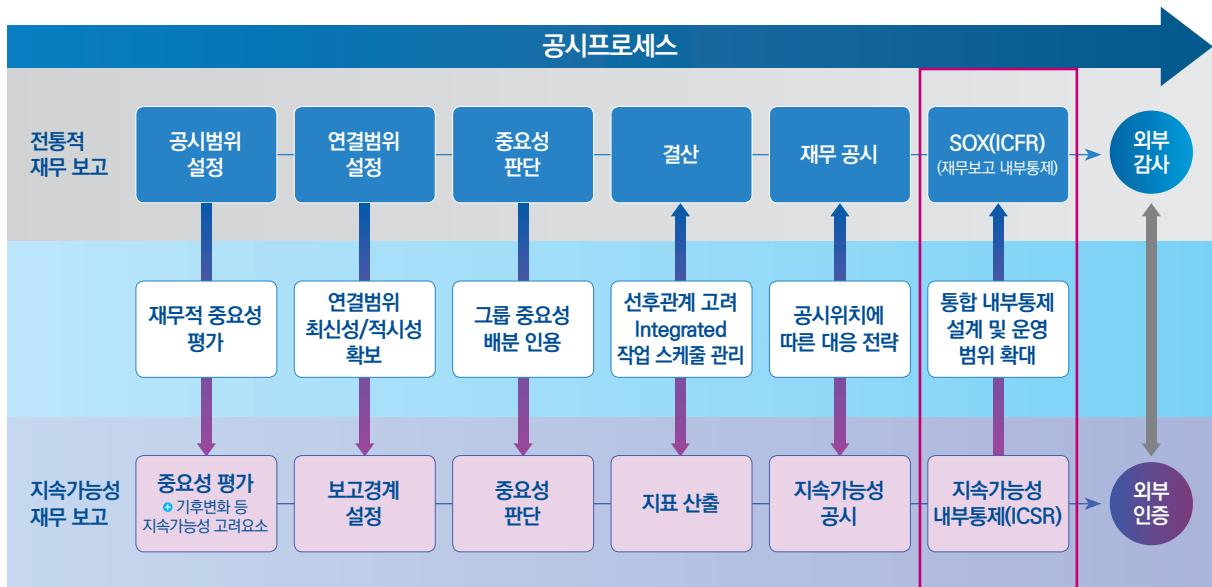
18 AXA,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 Annual Financial Report 2025"

19 Rio Tinto, "Annual Report 2025"

20 Shell,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기존의 ICFR 감독 역할을 확장하여 ICSR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명확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내부통제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공시 정보 전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복된 통제 운영을 완화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시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3) 외부 인증인 감독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감독 역할은 지속가능성 공시 외부 인증인에 대한 감독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선정 및 인증 결과를 적절히 감독하고, 인증기관이 기후 및 재무 전문성, 품질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인증 의무화를 고려한 데이터 관리, 내부통제 및 공시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감독할 필요가 있다.

III

감사위원회를 위한 기후 공시 준비 감독 고려사항

1. 기후 공시 거버넌스 구축 및 감독

KSSB 기준서 제2호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해당 책임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반영·운영되는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사안이 의사결정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통합되는 방식, 관련 전략을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기량과 역량의 확보 또는 개발 여부, 보고의 빈도, 그리고 목표 설정·이행 감독과 보상체계와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곧 기업이 기후 공시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것을 전제한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후 공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oversight)할 책임을 부담한다. 즉,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감독 책임이 명확히 배분·문서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시된 거버넌스 체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거버넌스 구축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기후 관련 사안을 감독하는 기구 또는 인력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적격성(기량·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KSSB가 요구하는 '전략 감독을 위한 기량·역량 확보' 공시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으로, 기후 위험과 회계·재무보고 간의 연계를 이해하고 관련 공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거버넌스 체계 내에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된다.

나아가 감사위원회는 자신이 수행하는 감독 역할 — 기후 관련 공시 정보의 정확성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 내부통제(ICS) 체계의 감독, 외부 인증인에 대한 감독 — 을 감사위원회 규정이나 직무기술서에 명확히 문서화·공식화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권한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감독 기능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장치이다. 감사위원회의 감독 범위가 전통적인 재무보고를 넘어 위험관리·내부통제·지속가능성 공시로 빠르게 확장되는 환경에서, 명확한 규정은 감독 책임의 범위를 정의하고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해외사례] Rio Tinto의 감사위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6년 2월)

호주의 광업기업 Rio Tinto는 26년 2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포함한 비재무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위험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공식화하였다.

〈Rio Tinto 감사위험위원회 운영규정(26.2.18)〉

2. 감독 범위 (Scope)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 a) 재무보고 프로세스(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포함)
- b)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과 전반적인 검증(assurance) 체계
- c) 내부감사 기능
- d) 외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e) 비재무 정보 공시 프로세스에 대한 감독(다음에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전략보고서(strategic report)
 - 기후 관련 공시
 - 광물 매장량 및 자원(ore reserves and mineral resources)
 - (지속가능성위원회의 지원 하에) 지속가능성 보고

감사위원회 고려사항²¹

-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의 식별 및 보고 책임을 어디에 배분했는가? (예시: 이사회 전체,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그 책임과 역할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는가?
-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재무적 영향 포함)의 평가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더 나아가 재무제표에 인식 및 공시된 금액 간의 연계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는가?
-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준거기준, 자본시장법 등 공시·인증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가?
-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는 빈도(주기)는 적절하며, 기후 관련 목표 설정 및 진척도를 감독하는 방법은 적절한가?
- ▶ 임원 보상과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의 연계로 인한 부정위험(목표 달성 압박에 따른 데이터 조작 등)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21 다음의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함

Accountancy Europe, "ESG Governance Recommendations for Audit Committees", 2022

Canada Climate Law Initiative, "Audit Committees and Effective Climate Governance", 2020

CPA Canada, "Climate Change – A Role for Audit Committees", 2022

2. 기후 공시 정보 감독

(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중요성(Materiality) 평가의 적정성 검토

중요성 평가 기준은 어떤 위험이 중요한 것으로 식별되는지, 무엇을 공시하고 무엇을 공시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경영진의 판단이 크게 개입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중요성 판단에 사용된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기준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요한 위험 및 기회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자체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기후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감독

기후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감독은, 기업이 산출한 배출량 및 기후 관련 데이터가 단순한 관리 수준을 넘어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과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적용 기준 및 주요 가정이 검증 가능하고 일관되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생성·집계·보고되는 전 과정에서 외부 인증 대비가 가능한지, 그리고 입력·검토·승인 등 핵심 통제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기후 관련 공시의 일관성 감독

감사위원회는 기후 관련 공시가 다양한 보고 채널에 걸쳐 제공되는 만큼, 동일한 정보가 서로 다른 공시 간에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간에 배출량 수치, 감축 목표, 기후 위험 인식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생성·검증 및 보고 과정이 재무보고 통제 체계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기초 데이터와 가정이 모든 공시에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 하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공시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는지, 산업 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공시 간 불일치로 인한 왜곡표시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4)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상호연계성 감독

기존 회계기준 하에서도 지속가능성 관련 불확실성의 재무제표 반영은 가능했으나, 실제 공시에서는 기후 관련 정보의 불충분성과 재무제표와 기타 보고 간 비일관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용 사례를 제시²²하는 등 재무제표·회계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가 재무제표 상 인식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인식·측정 및 회계 추정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재무제표 정보가 지속가능성 공시의 재무적 영향 측정과 설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후 관련 위험 및 전환 정책이 자산의 사용기간과 회수가능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가상각 및 손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경 관련 의무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한 총당부채가 적절히 인식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제시되는 기후 관련 재무영향, 전환계획 투자 규모(Capex), 예상 비용 및 수익효과 등이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에 사용된 재무정보와 일관되게 산출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넷제로 목표 및 시나리오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정(예: 탄소가격, 수요 전망 등)이 재무제표 상의 추정치 및 가치평가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기후 관련 정보가 단순한 공시에 그치지 않고 재무적 의사결정과 재무제표에 일관되게 반영되는 ‘연결된 정보’로 기능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 추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후 요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공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재무보고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2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5.11.28. 발표한 'Disclosures about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를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K-IFRS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불확실성 공시 - 사례'를 발표하고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9월 8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해외사례] 프랑스 광업 기업 Imerys의 재무제표 손상검사 주석 공시²³

프랑스 광업 기업 Imerys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2°C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산 폐쇄 가능성과 현금흐름 감소를 추정하고, 이러한 가정을 손상검사에 반영하여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후 위험이 단순한 공시를 넘어 현금흐름, 할인율, 장기 성장률 등 핵심 회계 추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Imerys는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룹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2021년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지구 온난화 +2°C(2030년 기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검토하였다.

경영진은 각 사업장의 예정된 폐쇄 빈도와 이에 따른 현금흐름 손실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RAC 현금창출단위(CGU)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중간 시나리오(mid case scenario)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 결과, PM EMEA & APAC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손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손상검사에 사용된 사업계획은 해당 CGU가 속한 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가정하고 있으며, Horizon 프로젝트의 영향도 반영하고 있다.

한편 RAC 현금창출단위의 경우, 아래에 제시된 금액은 이미 인식된 손상차손에 더하여 추가로 인식될 수 있는 비용 규모를 의미한다.

▶ 민감도 분석 결과 표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중간 시나리오 (Mid case)	현금흐름 5% 감소	할인율 1% 증가	영구성장률 1%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Performance Minerals – Americas (PM Americas)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Performance Minerals – EMEA & APAC (PM EMEA & APAC)	(31)	(138)	(81)	없음	없음
Refractory, Abrasives & Construction (RAC)	(58)	(142)	(89)	(21)	
Graphite & Carbon (IG&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3 Imerys,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2025”, p. 376

감사위원회 고려사항²⁴

전략 - 중대성·위험·기회

- ▶ 회사의 중요성(materiality) 판단 기준 및 중요 주제 평가 프로세스는 적절한가?
- ▶ 회사의 위험 수용도(risk appetite)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며,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은 적절한가?
- ▶ 회사의 재무상태·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회사의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 ▶ 경영진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들이 기업에 미칠 잠재적 재무영향을 판단하는가?
- ▶ 경영진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 정도와 그 발생가능성 및 영향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정된 기간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가?
-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전략 및 의사결정(제품·공급망 대응, 자원배분, 사업모형 변화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영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공시하는가?
- ▶ 경영진은 사업모형의 회복력을 어떻게 평가하며, 회복력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가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전략 - 시나리오·재무영향

- ▶ 경영진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테스트되었으며, 시나리오 분석의 방법, 수행시점, 주요 가정 및 투입변수는 적절한지 검토하는가? 더 나아가 주요 공시 사항이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 점검하는가?
- ▶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는가? 활용했다면 그 적정성을 어떻게 검증했고, 활용하지 않았다면 내부 역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지표·목표

- ▶ 경영진은 공시할 기후 관련 정보·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동종기업 대비 지표 선정이 타당하고, 기후전략·넷제로 목표·전환계획과 정합하는가?
- ▶ 지표 산출에 적용한 정책·방법론(예: 온실가스 산정 시 GHG 프로토콜 적용, Scope별 측정방법 등)은 무엇이며, 해당 지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일관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가?
-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포함한 기후 관련 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고 검토되며, 목표에 대한 진척도는 어떻게 모니터링 되는가?

24 다음의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함

Accountancy Europe, "ESG Governance Recommendations for Audit Committees", 2022

Canada Climate Law Initiative, "Audit Committees and Effective Climate Governance", 2020

CPA Canada, "Climate Change – A Role for Audit Committees", 2022

공시 정확성·연계·재무제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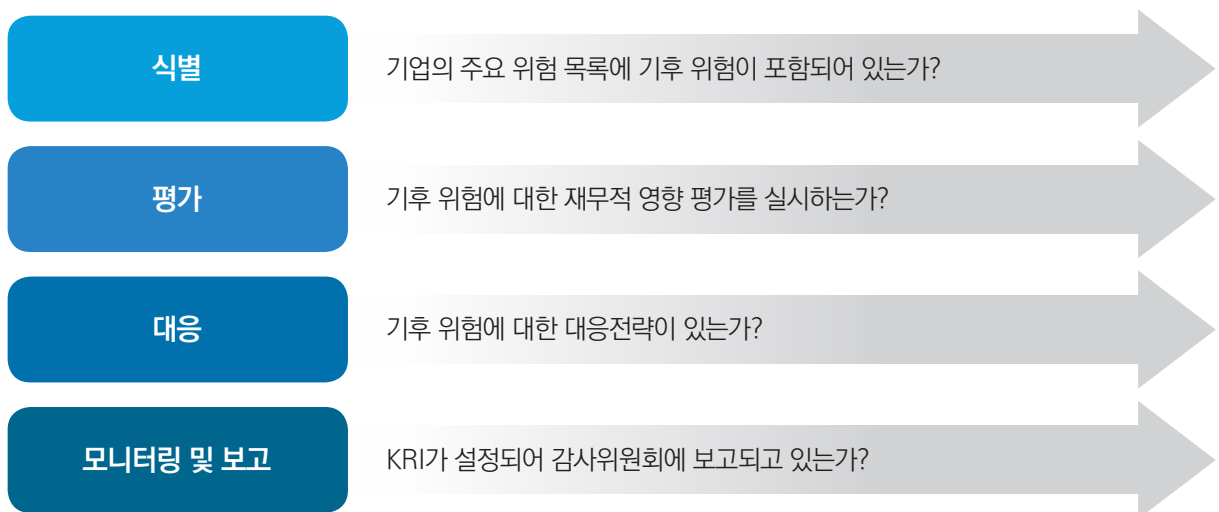
-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기후 공시와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정보가 서로 일관되며, 공시된 정보간 표현·수치·위험 설명이 일관되는가?
-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 상호 연계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용된 데이터와 가정의 일관성은 검토되는가?
- ▶ 기후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정보가 적절하게 공시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이 회계추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공시되는가?
- ▶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정보가 적절하고 일관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

3. 기후 관련 위험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1) 기후 위험의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ERM) 내재화 점검

기후 위험을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ERM)에 내재화하는 것은 기후 위험을 별도의 관리 영역으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통합하여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략 수립, 운영 관리, 위험 관리, 재무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 등 기업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는 전 과정에서 기후 관련 위험이 고려되고, 다른 주요 위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식별·평가·관리·보고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후 위험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개별 분석 수준에 머무르게 되며 실제 경영 의사결정이나 재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 위험 프레임워크로의 기후 위험 통합 예시



일반적으로 위험 프레임워크는 ① 위험의 식별, ② 위험의 평가, ③ 위험 대응, ④ 모니터링 및 보고의 단계로 구성되므로, 감사위원회는 기후 위험이 이러한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기후 위험이 위험 레지스터(risk register 또는 risk profile)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식별·평가·모니터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다른 주요 위험과 동일한 보고 체계를 통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감사위원회는 기후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단순한 형식적 존재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문서화되어 있으며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 식별·평가·대응·모니터링의 각 단계별로 담당 조직과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관련 절차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관리 체계로 정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후 위험 관리 체계가 기후 공시의 내부통제 관점에서도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기후 위험이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와 연계되어야 관련 내부통제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인식과 측정 과정에도 일관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 자본배분,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기후 위험이 재무보고 및 공시와 연계되는 정책과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 위험을 단순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만 다루거나, 주요 전략·운영·재무 의사결정 과정과 분리된 채 별도의 위험으로만 관리하는 경우, 해당 위험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사위원회는 기후 위험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험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기후 관련 데이터에 대한 내부통제 효과성 감독

기후 관련 데이터에 대한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것은 기후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운영, 공급망, 재무전략 등 다양한 기능에서 생성되는 기후 관련 데이터는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기후 위험 관련 지표 등으로, 경영의사결정 및 공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출처와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지,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영역이 과도하지 않은지, 데이터 수집 기준과 범위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의 산출 및 검증 과정에 적절한 내부통제가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데이터 입력 및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산출 결과에 대한 리뷰 및 승인 절차, 주요 가정이나 추정치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통제 체계는 단순한 운영 관리 수준을 넘어,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에 준하는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후 관련 데이터가 재무제표 추정 및 공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재무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후 관련 데이터가 재무정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기후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계하거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후 관련 정보가 재무보고 프로세스와 단절되지 않고 일관된 통제 환경 하에서 관리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시 정보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내부감사를 통한 기후 위험 및 기후 관련 데이터 검증 체계의 독립적 점검

내부감사를 통한 기후 위험 및 기후 관련 데이터 검증 체계의 독립적 점검은 기후 관련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감독 요소이다. 내부감사 기능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후 위험 관리 및 데이터 산출·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관련 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기후 위험이 내부감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위험의 중요도가 평가되어 위험기반 내부감사계획(risk-based internal audit plan)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 기후 관련 데이터 산출 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활동에 대해 실제 내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 관련 데이터의 생성·검증 과정과 관련 통제에 대해 충분한 범위와 깊이로 내부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결과가 적시에 보고되고, 주요 발견사항 및 개선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 관련 정보와 관리 체계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검증 결과가 공시의 신뢰성 제고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고려사항²⁵

- ▶ 기후 관련 정보가 원천 데이터 수집·측정부터 산정·집계, 기록, 검토·승인,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준하는 통제활동 하에 산출되며, 향후 외부 인증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는가?
- ▶ 기후관련 정보와 그 정보가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집계·분석·보고할 수 있는 통제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관리·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어떻게 확보하며,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는 무엇인가?
-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동적이므로, 새로운 위험·기회를 지속적으로 식별·평가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 ▶ 기후 관련 보고·규제·산업 동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가? (KSSB 로드맵 일정, EU CSRD/미국 SEC 등 국가별 공시 동향, 투자자 요구 수준, 산업 전환 속도 등)
- ▶ 내부감사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는가?
- ▶ 내부감사는 기후 데이터의 수집·보고 절차 검토에 참여하며, 기후 관련 내부통제의 설계·운영을 평가하고, 내부감사계획에 기후 관련 검토를 포함하는가?

4. 외부 인증

외부 인증(assurance)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기후 관련 데이터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기업은 외부 인증을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 인증의 범위와 수준을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인증 대상 및 범위(예: 배출량, 감축 목표, 재무적 영향 등)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범위가 기업의 기후 관련 중요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에 포함되는 정보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인 기후 위험이 축소·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관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명성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예: GHG Protocol), 기후 시나리오 분석, 회계 추정과의 연계 등 기후와 재무보고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감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25 다음의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함

Accountancy Europe, "ESG Governance Recommendations for Audit Committees", 2022

Canada Climate Law Initiative, "Audit Committees and Effective Climate Governance", 2020

CPA Canada, "Climate Change – A Role for Audit Committees", 2022

아울러 인증 수행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출처 추적 가능성, 주요 가정 및 추정에 대한 검증 절차, 내부통제 테스트 수행 여부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 결과 식별된 통제 미비점이나 데이터 오류가 단순 시정에 그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준하는 통제 체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고려사항²⁶

- ▶ 감사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인을 선정할 때, 인증인의 전문성, 더 나아가, 인증시간·인력·보수 및 인증계획의 적정성 등 선정 시 고려요소가 충족되는지를 적절히 점검하고 있는가?
- ▶ 감사위원회는 인증의 범위와 확신 수준(제한적/합리적)이 해당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되었는지 검토하는가?
- ▶ 감사위원회는 인증 결과 및 주요 발견사항을 검토하는가? 또한 인증인과 독립적·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며, 그 빈도·참석자·주요 논의내용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점검하는가?

26 다음의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함
Accountancy Europe, “ESG Governance Recommendations for Audit Committees”, 2022

Contact us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변영훈

감사부문 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심정훈

상무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민경석

수석연구원
T. 02-2112-4292
E. kyeongseokmin@kr.kpmg.com

박수진

선임연구원
T. 02-2112-7728
E. spark153@kr.kpmg.com

김민규

부대표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이민형

이사
T. 02-2112-7854
E. minhyunglee@kr.kpmg.com

박윤진

책임연구원
T. 02-2112-4603
E. ypark7@kr.kpmg.com

ESG Reporting & Assurance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한대근

상무
T. 02-2112-6607
E. dhan2@kr.kpmg.com

손민

상무
T. 02-2112-3036
E. minson@kr.kpmg.com

권희준

상무
T. 02-2112-3194
E. heejoonkwon@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